

(별지 제2호서식)

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변경허가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
	성 명 (법인·단체명)		전화번호	
			주민등록 번 호	
허 가 사 항	허 가 내 용		변 경 신 청 내 용	
사 용 구 분				
사용시설명 또는 사용내용				
경기(행사)명				
사 용 기 간	주 간			
	야 간			
기 타				
허 가 조 건				

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
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허가 합니다.

년 월 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(직인)

(별지 제3호서식)

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사용(변경)허가서				
사 용 자	주 소			
	성 명 (법인·단체명)		주민등록번호	
사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: ~ :			
사용목적				
사 용 부 대 시 설	조명(라이트)			
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. (허가조건 참조) ◆ 허 가 조 건 ◆ ○ 관계법령,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. ○ 실내게이트볼장 내에서의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. ○ 재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. ○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·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○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, 사고 발생시 제반 사항은 이용자가 민.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. ○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. ○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. ○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. ○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.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				

(별지 제4호서식)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을 관리함에 있어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- 다 음 -

1. 공고에 부치는 사항

가. 시설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94-1번지

나. 규 모 : 대지 m², 연면적 m²

다. 위탁내용 :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시설 관리 및 운영

라. 신청기간 : ○년 ○월 ○일 ~ ○년 ○월 ○일까지

마. 접수장소 : 서구청 문화공보과

2.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:

3.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: ○년 ○월 ○일(:) 서구청 2층 대강당실

4. 참가자 제출서류

가. 위탁신청서 (소정양식)

나. 사업계획서

다. 당해연도 법인(단체)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

라. 대표자 이력서

마. 법인(단체)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

바. 종사자 확보계획서(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)

5. 문의처 및 기타사항

가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문화공보과로 문의(☎ -)

나. 신청서는 우편접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(별지제5호서식)

위탁신청서

1. 시설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

2. 신청자 기재사항

법인(단체)명		법인가분	시설(), 지원()
허가(등록)기관		허가(등록)일자	
허가(등록)번호		법인(단체)목적사업	
대표이사 성명		대표이사 주민번호	
대표이사 주소			
법인(단체) 현소재지			
재정상태	동산 :	원, 부동산 :	원

3. 제출서류

- 가. 사업계획서
- 나.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
- 다. 대표자 이력서
- 라. 법인장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
- 마. 종사자 확보계획서(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)

4. 약정사항

- 가.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후 지정 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.
- 나. 관내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.

년 월 일

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운영을 신청합니다.

위 법인(단체) 대표자 (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(별지 제6호서식)

수탁결정통지서

시설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

수탁자 성명 :

주소 :

귀 법인(단체)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, ○년 ○월 ○일까지 우리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.

만약 위 기간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(인)

공	고
---	---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553호
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,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6월 19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**인천광역시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
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(안) 입법예고****1. 폐지 이유**

-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해 온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0조 및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대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생업자금대여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지원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하되었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,
- 본 조례 관련 자금은 일반회계로 여입하여 사회복지 증진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조례 폐지**3. 의견제출**

- 이 조례 폐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주민생활 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292) 및 FAX(560-4979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- ▷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 - ▷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▷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(안)

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중 융자된 융자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